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43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차지호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5. 1. 20.
3. 회 부 일: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u>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③ (생략)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u> ② ----- ----- -----<u>위험성 등</u>----- -----. ③ (현행과 같음)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구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체류하게 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도망을 방지하고 증거인멸을 막아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구속은 법적 성격상 형벌이 아닌 소송법상의 강제처분으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예외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속에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함.

나. 구속의 요건¹⁾

1)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원은 “피의자·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또는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음.

다.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보호를 위한 구속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및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위해를 가할 우려”라는 요건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소통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등에도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해”의 범위와 “우려”의 정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 구속은 형벌이 아닌 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이므로,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적 성격을 띠게 되어,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70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대한 사유와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구속사유 심사 시 병행하여 고려하게 되어있는데, 제2항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다른 구속사유 판단 시에는 이를 고려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 및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구속은 “수사와 재판 출석 및 형 집행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목적과 다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속을 하는 것은 예방적, 보안처분적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행 법제 하에서도 피해자보호라는 취지가 달성되고 있으며,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 다른 제도를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확대라는 점에서 공감하나, 구속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필요성 간 비교형량, 최소침해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3